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78
----------	-------

발의연월일 : 2026. 4. 28.

발 의 자 : 김성원 · 정동만 · 김선교
고동진 · 김정재 · 김용태
박충권 · 이헌승 · 김승수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주체인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 촉진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형성된 특정 산업 분야 내 중소기업 간의 협업이나 가치사슬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국가균형발전 및 장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비수도권 및 접경지역에 대해 산업 여건과 중소기업의 집적도를 고려하여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지역주력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 생태계 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맞춤형 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지역별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시도별 지역중소기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지역전담기관이 지역 산업 분석부터 기업 지원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 중심의 자립적 성장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수도권 외 지역 및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중소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정의하고, 시·도지사가 중기부와 협의하여 이를 선정·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11조의2).
- 나. 지역주력산업의 법적 근거 확보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지역주력산업진흥계획'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법정계획인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과 통합 작성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지역주력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
- 라. 인구감소지역 등의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과 시·도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발굴·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 마. 향토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20인 이상'에서 '소상공인 기준 초과'로 완화하여 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지원 수단을 보증 외에 R&D, 판로, 인력양성 등으로 확대함(안 제29조).

바.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도별 전담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둠(안 제32조의2 및 부칙 제2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역주력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중소기업의 혁신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제6조제2항제6호 중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를 “지역주력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제7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조정에”를 “지역주력산업의 선정 및 육성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에”를 “제7조 및 제9조에”로, “성과 분석에”를 “조정 및 성과분석에”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역주력산업의 선정 등) ①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제10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주력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지역주력산업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

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주력산업을 선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주력산업의 규모
2. 지역주력산업의 성장 가능성
3. 국가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성
4. 지역경제 및 산업환경의 상황
5. 그 밖에 지역주력산업의 선정 또는 변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지역주력산업을 선정한 이후 5년이 경과하거나 지역의 경제상황 및 산업환경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3(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은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이 지역의 특산자원 또는 특화된 기술 등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제의 발굴,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지역특화프로젝트 발굴·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지역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발굴·제안하는 과제에 대해 제11조제1항의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발굴,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 제목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향토기업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20명 이상일”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향토기업에 대하여 연구 개발, 사업화 추진, 국내외 판로확보, 인력양성 및 보증제도 등”으로, “예산을 지원할”을 “지원을 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향토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시도별 전담기관의 설립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지역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도별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전략 수립
2. 지역 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성장 지원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4.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지원
5.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6. 지역중소기업 인재 양성·공급 지원
7. 지역중소기업 자료 수집, 데이터 분석 및 조사 연구
8. 지역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및 과제발굴·기획
9.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업무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담기관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정관은 중소기업

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별로 설립된 전담기관의 명칭은 전담기관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테크노파크”를 붙여 사용하며, 이 경우 테크노파크가 아닌 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전담기관의 경영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전담기관에게 성과급 또는 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경영 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예산상 및 경영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기술단지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중에서 사업범위가 시·도인 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담기관으로 본다.

<p>사항</p> <p>7. ~ 14. (생략)</p> <p>③ ~ ⑦ (생략)</p> <p>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p> <p>① (생략)</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 (생략)</p> <p>2. <u>제7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u></p> <p>3. <u>제9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u></p> <p>4. ~ 8. (생략)</p> <p>③ ~ ⑦ (생략)</p> <p><u><신설></u></p>	<p><u>립 및 지원에</u>-----</p> <p>7. ~ 14. (현행과 같음)</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지역주력산업의 선정 및 육성 등에</u>-----</p> <p>3. <u>제7조 및 제9조에</u>----- -----<u>조정 및 성과분석에</u>----- -----</p> <p>4. ~ 8. (현행과 같음)</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2(지역주력산업의 선정 등) ① <u>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제10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주력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지역주력산업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u></p> <p>② <u>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주력산업을 선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1. <u>관할 지역 내 주력산업의 규</u></p>
---	--

모

2. 지역주력산업의 성장 가능성

3. 국가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

성

4. 지역경제 및 산업환경의 상

황

5. 그 밖에 지역주력산업의 선

정 또는 변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지역주력산업

을 선정할 이후 5년이 경과하

거나 지역의 경제상황 및 산업

환경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3(지역연고산업 육성사

업의 추진 등) ① 시장·군수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

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

<신 설>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 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은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이 지역의 특산 자원 또는 특화된 기술 등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제의 발굴,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4(지역특화프로젝트 발굴·지원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지역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발굴·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증 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향토기업에 대하여 연구 개발, 사업화 추진, 국내외 판로확보, 인력양성 및 보증제도 등-----
---지원을 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향토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의2(시도별 전담기관의 설립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지역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도별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전략 수립
2. 지역 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성장 지원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4.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지원

5.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
의 사업화 지원

6. 지역중소기업 인재 양성·공
급 지원

7. 지역중소기업 자료 수집, 데
이터 분석 및 조사 연구

8. 지역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및
과제발굴·기획

9.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
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업무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과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담
기관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정
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별로 설립된 전담기
관의 명칭은 전담기관을 설립
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테
크노파크”를 붙여 사용하며, 이

경우 테크노파크가 아닌 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매년 전담기관의 경영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전담기관에게 성과급 또는 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경영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예산상 및 경영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
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